

「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」 공시송달 공고

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를 발송하였으나 '수취인 불명'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,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7. 1.

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



- 건명: 「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」 공시송달
- 근거: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3조,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
-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사업장명(대표)	생년월일	주소	공시송달 내용
서광산더미감자탕(임*택)	1981. 5. 18.	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(이하 생략)	근로감독관의 정당한 출석요구에 대한 불응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해 2026. 7. 16.까지 자진납부 및 의견진술 (기한 이후 정식 부과 예정) 자진납부시 금액: 400,000원 정식부과 예정액: 500,000원

- 공고기간: 2026. 7. 1.~2026. 7. 16.(15일간)
-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 근로감독관 김승희(064-728-712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